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나205075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나20507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가단11437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서진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준만

변론 종결2023. 11. 9.

판결 선고2023. 12. 7.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가단11437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360,5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17행(표 안 5행) '비용으로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영업사원의 실수가 아닌 회사 업무사원에 의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상황보고 후 그 손실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원고 50%, 피고 50% 손실 부담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5행 각주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미회수 용역대금은 40,360,525원이 아닌 26,224,975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7, 3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20.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처 미수가 4,300만 원 정도로 큰데 언제 입금될 예정인가?'라는 이메일을 보내자 피고가 '해당 건 2020년 1월에 계산서 발행되었고 5월 중순까지 입금처리해주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회신한 점, ② 원고가 2020.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미회수 용역대금이 40,360,525원으로 정리된 잔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용역대금 회수 일정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자 피고가 2020. 7. 28. '이 사건 거래처: 40,360,525원, 8월 초에 건설현장 가동이 되면 우선적으로 관련 금액 변제한다고 하여 제가 받는 즉시 금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신한 점, ③ 피고가 2020. 7. 14. 원고 직원 D에게 '이 사건 거래처의 미수채권은 26,224,975원입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거래처 E, (주)F, (주)G, H에 대한 미회수채권액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D은 다른 항목에 대하여는 '입금 요청드리겠다' 또는 '확인 후 정정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처의 미회수채권액에 대하여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이 사건 거래처의 미회수 용역대금이 26,224,975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세금계산서 발행, 용역대금 수령 등 채권 회수 관련 업무는 원고가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이 시효소멸한 것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따라 미회수 용역대금에 대해 적어도 50%의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 '국내·해외 미회수금 등 제반 비용은 영업사원의 비용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직원은 각 거래처에 대한 미회수 용역대금을 잔액명세서 형태로 정리하여 피고 등 영업사원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각 거래처의 입금 일정도 피고 등 영업사원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한 점, ② 피고도 2020.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처는 8월 초에 건설현장 가동이 되면 우선적으로 변제한다고 하므로, 제가 받는 즉시 금액 정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독촉이나 대금 수령 업무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 회수 관련 업무는 영업사원인 피고가 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이 시효소멸한 것이 원고 측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설령 피고에게 미회수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실적급여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39205호(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23. 6. 30. '원고는 피고에게 38,460,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별건 소송이 항소심 계속중에 있으므로, 위 실적급여 정산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이 사건에서 을 제8호증으로 별건 소송의 제1심판결문만을 제출하였을 뿐 자동채권인 실적급여 정산금 채권의 발생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등 참조), ① 피고의 자동채권에 관하여는 이미 가집행선고가 있어 피고로서는 그 가집행이 실효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집행을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피고는 상계 주장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와 집행을 저지할 수 있게 되어 상계제도의 근거가 되는 공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는 점, ② 피고로서는 가집행을 통해 자동채권의 즉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상계권을 제한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별건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실적급여 정산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특히 별건 소송은 명시적 일부청구 사건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 판결의 모순·저촉이나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허용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귀옥

판사류하나

판사옥제영